

회사정리법 · 파산법 · 화의법에서의 임금채권의 취급

정태상

변호사

1. 도산시 처리 절차의 종류

도산이란 대개 기업이 발행어음 등의 부도로 인하여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¹⁾, 법 개념으로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²⁾

도산의 경우, 재판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도산을 처리하는 절차로는 청산형 도산 처리절차인 파산절차, 재건형 도산 처리절차인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³⁾ 등이 있다.

회사의 도산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채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중소기업이 도산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의 재판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도산을 처리하는 예는 오히려 드물고 근로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⁴⁾

1)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서는 도산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로도 사용된다.

2) 임종현, 대표적 도산처리절차인 파산절차의 개관과 그 활용, 저스티스 제29권 제1호

3) 화의에는 파산법상의 강제화의와 화의법상의 화의가 있지만, 협의의 화의는 화의법상의 화의만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도 화의법상의 화의만을 화의절차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금채권 우선변재의 규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소송법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확보에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런데 기업의 도산처리절차에 관한 법률인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에서도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일반채권과 다른 취급을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알아본다.

2. 회사정리법에서의 임금채권의 취급

가. 회사정리 절차의 개요

(1)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 회사정리절차는 주식회사에 한하여 인정되고 채무자(주식회사 자신),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 총수의 10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 내지 제34조 참조)

(2) 법원의 조사 : 법원은 신청을 받은 뒤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나 관계인을 심문할 수도 있고 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의 긴급조치

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전에 파산절차, 화의절차,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⁴⁾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

4) 서울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보면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2년동안 146건의 회사정리사건이 접수되어 이중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것은 43건이고, 위 기간동안 화의사건은 10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1995년과 1996년에 접수된 것이라 한다(김형두,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 및 화의사건 실무」, 『인권과 정의』 1996년 9월호).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규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소송법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확보에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런데 기업의 도산처리절차에 관한 법률인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에 서도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일반채권과 다른 취급을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알아본다.

2. 회사정리법에서의 임금채권의 취급

가. 회사정리 절차의 개요

(1)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 회사정리절차는 주식회사에 한하여 인정되고 채무자(주식회사 자신),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 총수의 10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 내지 제34조 참조)

(2) 법원의 조사 : 법원은 신청을 받은 뒤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나 관계인을 심문할 수도 있고 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의 긴급조치

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전에 파산절차, 화의절차,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⁴⁾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

4) 서울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보면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2년동안 146건의 회사정리사건이 접수되어 이중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것은 43건이고, 위 기간동안 화의사건은 10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1995년과 1996년에 접수된 것이다 한다(김형두,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 및 화의사건 실무」, 「인권과 정의」 1996년 9월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규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소송법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있는 정보의 유무를 불문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확보에 유리한 점이 있다.

(7) 정리절차의 종결과 폐지

관리인이 정리계획대로 수행하였거나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의 결정을 하고⁸⁾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거나 정리계획의 인가후 정리계획 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

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됨

(1) 공익채권의 의의 : 회사 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주로 정리절차 개시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을 말하지만 임금채권은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회사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등(위 조항 제11호)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공익채권의 효력 : 공익채권으로 되면 절차상으로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서 수시로 변제되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는다.(회사정리법 제209조)

①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서 수시 변제됨 -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 같이 정리절차에 따라 신고, 조사, 확정을 거쳐서 정리계획에서 그 변제방법이 정하여지거나 정리계획에 따라 채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며 신고할 필요없이 직접 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되지도 않는다.

8) 서울지방법원에서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정리계획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어 종결결정을 받은 경우는 13건이라고 한다. 김형두의 위 논문 참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은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이 필요하고 그를 위하여 조사기일이 열리지만 공익채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이와같은 채권의 조사, 확정을 거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익채권의 존부와 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해결할 것이며⁹⁾ 이 경우 소송당사자는 관리인으로 하면 된다.

② 중지명령과 공익채권 : 중지명령이 있더라도 공익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하여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등은 중지되지 아니하고 재산관계상의 소송절차 역시 중지되지 아니한다.¹⁰⁾

③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과 공익채권 :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되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등은 일체 허용되지 않고 소송절차도 중단되나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고 관리인을 상대로 한 소의 제기도 가능하다.

④ 다른 절차로 이행한 경우 :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되고, 화의절차로 이행한 경우의 공익채권은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또는 화의절차의 비용으로 간주된다.

(3) 회사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의 범위(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본호에서 급료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임금과 같은 것으로

9) 따라서 공익채권을 가지는 자는 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과 아울러 소를 제기하고 또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회사정리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형식에 따른 문리적 해석으로 중지명령이 내리면 공익채권의 재산관계소송도 중지된다는 설도 있으나 공익채권의 재산관계 소송이 중지명령에 의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최종 3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회사정리절차진행 중에는 모든 임금채권은 물적담보권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된다.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임금, 봉급, 수당, 상여금 기타 명칭의 여부를 불문하고 시간외 수당이나 가족수당도 포함된다고 보지만, 반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보상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드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회사정리절차진행 중에는 모든 임금채권은 물적담보권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된다.

문제는 재해보상금이나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것인가인데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권과 전혀 상관없이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해보상금이나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으면 일반정리채권으로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¹¹⁾

이는 입법상의 미비라고 생각된다. 특히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매우 부당한 입법이다.

(4) 공익채권의 변제에 대한 법원의 승인(회사정리법 제54조 제8호)

법원은 공익채권의 존부 내지 금액에 관하여 자의가 개재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채권의 종류를 특별히 정하여 그 발생, 승인 또는 변제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보통 실무상으로는 금액을 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11) 다만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이후의 재해보상금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2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후 회사의 사업의 경영에 관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다. 이와 같이 공익채권의 승인(또는 발생 또는 변제)이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그 공익채권의 변제에 앞서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신청은 관리인이 하여야 하고 공익채권자는 할 수 없다. 허가를 얻어야 할 것으로 된 공익채권을 허가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법원의 허가없이 변제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 관리인의 선임과 고용관계의 변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된다. 따라서 종전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 436호 판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는데, 보전관리인의 선임에 의하여 종래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상실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는 보전관리인이 되므로 퇴직금이나 임금의 지급은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이 하여야 한다.

3.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노사관계

가. 파산절차의 개요

(1) 파산신청과 파산선고

파산은 채권자 이외에 채무자 자신에게도 신청권이 있고 그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에게도 신청권이 있다.¹²⁾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그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된다.

파산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요건을 심리한 다음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법원은 파산선고전이라도 직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 파산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책임제한절차의 정지를 명할 있다.

파산선고시에는 동시처분으로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및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등을 정한다.

(2)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파산관재인은 취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선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자에 대한 부조료 지급, 감사위원을 들지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파산자를 당사자로 한 재산관계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이탈하거나 파산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해하는 부당한 편파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고, 반면에 제3자는 파산관재인이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관하여 환취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은 이를 환가하여 배당재단을 형성한다.

(3) 파산채권의 신고, 조사, 확정

파산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행사할 수 없는 채권이다. 다만 상계권, 별제권은 인정된다.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 기간 내에 그 채권의 액, 원인, 우선, 열후의 구분등을 파산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조사

12)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파산을 자기파산, 법인의 이사에 의하여 개시되는 파산을 준자기파산이라 한다.

기일에 조사를 받는데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은 확정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채권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파산절차의 종료

파산채권중 임금채권등과 같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반대로 파산선고 후의 이자등은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에게 배당하고 남은 경우 배당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기타 비용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배당절차가 끝나면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계산보고를 하고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하게 된다.

나. 파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의 취급

(1)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기본적으로 우선적 파산채권으로서 일반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회사정리법상 임금채권은 기본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파산법에서는 임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없어(오히려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과 충돌됨) 임금채권은 재단채권보다는 후순위로 지급된다. 특히 파산절차에서는 저당권자등 물적담보권자에 의한 별채권¹³⁾도 인정되어 결국 임금채권은 재단채권, 물적담보권자에 보다 변제순위가 늦게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명백한 입법상의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13) 별채권이란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상에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는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기본적으로 우선적 파산채권으로서 일반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2)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래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등에 필요한 비용과 조세채권에 한정되지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파산절차로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채권은 변경된 이후의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된다. 또한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채권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

(3) 파산선고가 진행중인 임금청구소송에 미치는 영향

파산이 선고되면 임금청구소송은 파산관재인에게 수계되어 계속된다. 그러나 퇴직금이나 임금채권도 파산채권의 일종이므로(단 우선적 파산채권임)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굳이 임금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는 없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서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가압류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파산선고 이후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없다.

4. 화의절차에서의 임금채권

가. 화의제도의 의의

화의법상의 화의란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 법원, 정리위원, 관재인의 도움과 감독 하에 채무자와 채권자(화의채권자)들 사이에 채무변제방법(화의조건)을 정하고 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선고를 면하는 제도로서 파산적 청산을 예방하여 기업을 유지 존속시킴으로써 기업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화의절차가 회사정리절차 및 파산절차와 가장 다른 점은 회사의 경영권, 재산처분권, 회사대표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다만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나. 화의절차의 개요

(1) 화의 개시의 신청 : 채무자가 화의조건 등을 기재한 화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2) 정리위원의 선임 : 화의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이 선임하고 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 화의조건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3) 채무자 재산의 보전처분 :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 변제금지, 차재금지를 명하는 절차임.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서에 의하여 채무자는 부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강제집행, 보전처분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4) 화의개시여부의 결정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의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고 관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관재인의 선임 : 채무자의 재산관리 및 처분행위시 동의 및 이의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임.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함.

(6) 화의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금지 : 화의절차중(화의개시결정 시점에서부터 화의인가시까지)에는 화의채권자(화의개시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우선권있는 채권자, 담보권자를 제외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를 구속하지만 화의제도는 화의채권자인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만 화의조건에 따라 구속을 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은 화의채권에서 제외된다.

한다)는 화의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7) 채권의 신고 :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화의채권자도 화의채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채권의 신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8) 채권자 집회 : 제공된 화의조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며, 출석화의 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신고를 한 화의채권자의 채권총액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9) 화의의 인부 결정 : 화의인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화의인가결정으로 화의조건에 따른 화의채권의 변경이 발생한다.

다. 화의절차가 임금채권에 미치는 영향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를 구속하지만 화의제도는 화의채권자인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만 화의조건에 따라 구속을 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은 화의채권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임금, 퇴직금 채권은 화의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화의조건에 상관없이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화의절차 진행전은 물론이고 진행중에도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할 수 있고 화의절차가 개시되어도 이미 진행중인 임금청구 소송의 당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화의법 제60조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